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발의년월일 : 2003. 12. 18  
발 의 자 : 이기동의원외

### 1. 수정이유

- 조항별 내용 중 “이용”과 “사용”의 용어를 섞어 사용함으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주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이용”을 “사용”으로 함 (안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3항 제2호,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3 제2항 제1호,  
제2호, 부칙 제2항, 현행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3항 제2호, 21조, 32조, 제33조, 제33조의 3 제2항 제1호, 제2호, 부칙 제2항, 별지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의 각각 제목 및 서식의 내용과
- 현행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내용 중 각각의 “이용”을 “사용”으로 한다.